Ⅳ-1. 콘텐츠지원사업 관리지침

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

콘텐츠지원사업 관리지침

제정: 2007.05.31. 개정: 2011.05.02. 개정: 2015.12.31. 개정: 2020.02.03. 개정: 2020.06.05.

개정: 2021.09.10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(이하 '관리규정'이라 한다)에 의해 진흥원장에 위임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11.05.02., 2020.06.05.〉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협약"이라 함은 진흥원장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 간의 계약행 위를 말한다.
- 2. "진흥원"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관리하는 '충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'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3. "주관기관"이라 함은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기관(업체) 및 개인 중에서 당해연도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(업체) 및 개인을 말한다.〈개정 2021.09.10.〉
- 4. "참여기관"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 (업체) 및 개인을 말한다. 〈개정 2021.09.10.〉
- 5. "수행계획서"라 함은 당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계획사항을 지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.
- 6. "목"이라 함은 사업비 중 인건비, 직접비, 위탁사업비 및 간접비 등의 예산 항목을 말한다.
- 7. "세목"이라 함은 '별표 3'에 의거한 목 내 세부 예산 항목을 말한다.
- 8. "집행잔액"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한 최종 수행계획서상 편성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.

- 9. "정산"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모든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.
- 10. "불인정금액"이라 함은 주관기관·참여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진 흥원장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, 집 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.
- 11. "정산잔액"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의 합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20.06.05.]

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'관리규정'에 의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적용한다.〈개정 2011.05.02., 2020.06.05.〉

제2장 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

제4조(지원사업계획의 공고) ①'관리규정'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진흥원장이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- 1.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
- 2. 개발 분야 및 지원 규모
- 3. 과제의 신청 자격, 방법, 절차 및 일정
- 4. 신청과제의 평가 기준 및 절차(개정 2020.06.05.)
- 5. 기타 필요사항
-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 계획 공고 기간은 1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진흥원장이 인정한 경우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제5조(지원과제 참여제한) ①'관리규정'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제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당해연도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를 초과하거나(2,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제외)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 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(개정 2011.05.02., 2015.12.31., 2020.06.05.)
- 2.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, 진흥원

및 유관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(책임자)인 경우(개정 2020.06.05.)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거나 상위 관리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을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〈개정 2011.05.02., 2020.06.05.〉

제6조(과제의 신청)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7조(과제의 선정) ① 진흥원장은 '관리규정' 제14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지원과제의 검토·평가 및 조정 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. 〈개정 2020.06.05.〉

- 1. 사전검토
- 2. 평가위원회 평가(개정 2020.06.05.)
- 3. 과제조정위원회 등(신설 2020.06.05.)
-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서면평가, 발표평가 및 현장 방문평가, 종합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.〈개정 2011.05.02., 2020.06.05.〉 ③ 진흥원장은 최종 선정 시에 후순위 예비과제를 평가점수별로 2~3개 선정하여 협약 미체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할수 있다.〈개정 2020.06.05.〉
- ④ 진흥원장의 승인 아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제8조(과제의 선정결과 통보) 진흥원장은 '관리규정' 제17조에 의하여 신규 과제의 검토, 평가 및 조정 결과를 지원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지원과제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06.05.)

제9조(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)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한 선정결과를 통보 및 과제 조정회의(해당과제)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진흥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사업의 특성상 수행계획서가 필요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.(개정 2020.06.05.)

② 진흥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

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주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요구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 〈개정 2020.06.05.〉

제10조(지원금액의 조정) ① 진흥원장은 제9조에 의한 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와 제11조에 의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신청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과제조정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- ② 지원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원 부서장 또는 담당자를 포함하여 지원금 조정안을 작성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. 이를 토대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금액을 확정한다.〈개정 2020.06.05.〉
- ③ 주관기관과의 협의 단계에서 개발인력 변경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원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5%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하되 진흥원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〈개정 2020.06.05.〉
- ④지원과제의 자부담 비율은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합하여 전체 지원금의 현금 10% 이상으로 하되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 다.〈신설 2020.06.05.〉

제3장 협약 및 진도관리

제11조(협약의 체결 및 책임) ① 지원과제의 수행을 위해 진흥원장은 주관 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협약서에 따른 첨 부 서류는 협약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- ② 국·공립기관, 정부 출연기관, 대학의 독립된 단위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 관으로 협약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 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협약의 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(개정 2011.05.02.)
 - 수행계획서
 - 2.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
 - 3.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)
 - 4. 인감증명서(법인의 경우 법인인감,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개인인감)
 - 5. 사용인감계(해당과제에 한함)
 - 6. 위임장(해당과제에 한함)
 - 7. 사업자부담금 확약서(해당과제에 한함)

- 8. 상용화계획서(해당과제에 한함)
- 9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- 10.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(제10조4항에 따른 자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액 기준으로 제출)(개정 2021.09.10.)
- 11. 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(신규발급)
- 12. 기타 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

[전호개정 2020.06.05.]

- ④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, 지원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참여 지분 비율에따라 손해를 분담한다. 다만, 어느 한 기관에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책임을 지울 수 있다.
- ⑤진흥원장은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해당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(신설 2020.06.05.)
- ⑥공동개발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상호협약 시 공동수행협약 서를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진흥원과의 협약체결 시 해당 협약서를 진흥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〈신설 2020.06.05.〉
- ⑦지원과제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재원의 특성상관련 지침이 있는 경우 사업별로 별도 지침을 따라야 한다. 〈신설 2020.06.05.〉
- 제12조(협약의 변경)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'별표1'의 관련 서류 및 수행계획변경신청서를 진흥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승인사항의 변경은 진흥원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20.06.05.)
 - 1. 승인사항(개정 2011.05.02.)
 - 가. 사업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 - 나.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 - 다. 참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 - 라. 주관기관의 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 - 마. 다음의 협약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 - 1) 목과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(개정 2020.06.05.)
 - 2) 최초 계획대비 인건비 증액 및 삭감을 하는 경우(개정 2020.06.05.)

- 3) 사업계획상에 미계산된 2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바. 기타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
- 2. 통보사항(개정 2011.05.02.)
 - 가. 참여인력의 변경(전체 참여인력의 50% 미만)(개정2020.06.05.)
 - 나. 승인통과 시 사업비 최종 변경내역
 - 다. 주관·참여기관의 대표자. 상호 및 주소(연락처) 변경
 - 라. 다음의 협약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 - 1)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20% 범위 이내의 세목 간 변경
 - 2) 삭제〈2020.06.05.〉
- ② 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은 당해 연차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진흥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한다. 단, 재난·천재지변 및 진흥원장이 불가 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(개정 2020.06.05.)
- ③ 진흥원장은 기술 및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목표,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제13조(협약의 해약)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- 1.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
- 2. 당해 지원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가 '70점' 미만인 경우〈개정 2020.06.05.〉
- 3. 사업목표가 타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 이 없는 경우
- 4.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의 1/3 이상(최대 30일)을 초과함에도 과 제 진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(개정 2020.06.05.)
- 5.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참여인력이 50% 이상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〈개정 2020.06.05.〉
- 6.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
- 7. 부도, 법정관리,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,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(개정 2020.06.05.)

- 8.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진흥원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06.05.)

제14조(진도관리) ① 진흥원장은 협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과 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〈개정 2020.06.05.〉

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진흥원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06.05.)

제4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

제15조(지원금 지급) ① 진흥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일시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1.05.02., 2020.06.05.)

-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1.05.02.. 2020.06.05.〉
 - 1. 사업비 사용계획서(해당사업에 한함)
 - 2. 기술료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(기술료 징수 대상일 경우)(개정 2020.06.05.)
 - 3. 기타 진흥원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〈개정 2020.06.05.〉
- ③ 진흥원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관리계좌에 각각 입금한다.(개정 2020.06.05.)
- ④ 진흥원장은 주무관청의 재정사항, 지원금 청구지연, 협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⑤ 삭제〈2020.06.05.〉

제16조(사업비 사용) ① 사업비는 진흥원의 예산사용 지침에 근거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.(개정 2020.06.05.)

-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법인카드사용과 계좌이체를 통한 사업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카드사용과 계좌이체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금사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. 〈개정 2020.06.05.〉
- ③ 제2항의 사업비 현금사용은 불가피한 특수한 사정이 있을 시 진흥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06.05.)
- ④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사업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20.06.05.〉
-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지원사업 및 과제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사업자부담금
- 2. 진흥원장이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 〈신설 2020.06.05.〉

제17조(사업비의 관리)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06.05.)

② 사업비의 관리·사용·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진흥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제5장 사업비 정산 및 회수금의 징수

제18조(사업비 정산범위) ① 사업비 정산은 각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실시한다. 단, 사업 특성에 따라 진흥원의 요구 시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. 사업비 정산기준은 '별표3'과 같으며 정산범위는 주관기관 및참여기관이 집행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산범위를 지원금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원금 외 총제작비에 해당하는 정산 내역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제19조(사업비 사용실적 보고)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 연차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흥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- ② 삭제 〈2020.06.05.〉
- ③ 삭제 〈2020.06.05.〉

제20조(사업비 사용실적 검토) ① 진흥원장은 제19조에 의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산보고서, 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사업비사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1.05.02., 2020.06.05.〉

-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제12조(협약의 변경)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승인 및 통보사항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. 단, 간접비 중 간접경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하고(개정 2020.06.05.)
 - 1. 당해연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 단,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.
 - 가. 당해연도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한 금액(보고서 발간비용 및 회계감사 수수료 등)
 - 나. 계속과제로서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, 당해연도 협약 기간 종료 후 납품된 기자재비(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 지 납품되는 것에 한함)
 - 2.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직접비로 집행한 금액
 - 가. 당초 계획에 의한 기자재 외 기관 공통성 집기류, 가전제품(TV, 냉장고 등), 핸드폰, 전자수첩 등으로 집행한 경우
 - 나. 전기료, 건물임대료, 상하수도료, 건물관리비, 냉난방비, 경비용역비, 기관홍보성광고료, 판공비, 이동전화비, 명함제작비 등으로 집행한 경우
 - 3. 간접비 내 간접경비 등의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(개정 2020.06.05.)
 - 4. 기타 진흥원장이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(개정 2020.06.05.)
- ③ 진흥원장은 사업비 사용실적검토 시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

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 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06.05.)

제21조(정산잔액의 반납)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개발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과 제20조 제2항에 의해 회수되는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며, 이는 지원금 지분과 사업자부담금 중 자체현금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중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(개정 2020.06.05.)

정산잔액 중 지원금 지분 = 정산잔액 X ------(지원금 + 자체현금부담금은 당해연도 해당과제 총 지원금 및 자체현금부담금임

- ② 진흥원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잔액과 불인정금액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,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(1회에 한함)하거나, 정산잔액과 불인정금액을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이체확인증을 진흥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〈개정 2020.06.05.〉
- ③ 진흥원장은 불인정금액이 당해연도 사업비의 10% 이상 이거나,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불인정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0.06.05.)
- ④ 삭제 (2020.06.05.)

제22조(기간 중 발생이자의 처리) ①협약기간 및 집행잔액 반납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업비 집행잔 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②삭제〈2020.06.05.〉

제22조의 2 삭제(2020.06.05.)

제23조(채권추심 등) ① 진흥원장은 정산잔액 반납 통보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와 기술료 납부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- ② 채권처리 절차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1차(협의): 채권 사유 발생일 이후 1~3개월
 - 2. 2차(내용증명): 채권 사유 발생일 이후 3개월 이내
 - 3. 3차(채권추심기관 위탁):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종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기관에 업무 이관
 - 4. 4차(법적대응 및 결손처리): 채권추심기관의 결과를 진흥원장 보고 및 승인 후 처리

[전문개정 2020.06.05.]

③진흥원장은 제1항에 의해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,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정산잔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. (개정 2020.06.05.)

제24조(기술료 등 회수금의 징수) ①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은 기술료를 징수하며 지원금 지급 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기술료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.(단, 지원과제가 2,000만 원 미만일 경우 또는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.)

- ② 기술료 징수 비율은 실지원금의 10%로 하되, 사업 특성상 징수비율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납부기한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. 단, 1년 이상의 납부기한 연장은 채권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.
- ③ 기술료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서 부담한다.
- ④ 기술료 납부기한은 협약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기술료는 필요할 시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. 단,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기술료의 20%를 감면한다.
- ⑤ 진흥원장은 기술료 납부 기한 마감 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구상권청구 및 채권 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채권처리 절차 미 기관은 제23조 2항과 같다.
- ⑥ 재난, 천재지변 및 진흥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기술료 감면 비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은 진흥원장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0.06.05.]

제25조(지적재산권 양도)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〈개정 2020.06.05.〉

제6장 보고서 제출 등

제26조(결과보고서 제출)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진흥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제출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- 1. 결과보고서
- 2. 기타 진흥원장이 요구하는 서류(개정 2020.06.05.)

제27조(지원사업 결과의 평가)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제출한 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(개정 2020.06.05.)

제27조의 1(성과보고서 제출)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과제로 인한 성과보고서를(매출, 유통, 계약, 관람, MOU, 방영, 출시, 기술이전, 특허출원 및 등록, 논문게재 등 계약서, 계산서, 입점 플랫폼 및 콘텐츠 단가표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) 1년 단위로 진흥원장이 정한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지원과제가 2,000만 원 미만일 경우 또는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은 제외 할 수 있다. ② 성과보고서 미제출 기관은 콘텐츠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.

[전문신설 2020.06.05.]

제27조의 2(만족도조사 실시) ① 사업담당자는 사업별 특성(교육 등)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설문지 '별표4'에 의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- ② 만족도조사를 평가항목 및 내용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, 평가 척도는 반드시 5점 만점으로 통일하여야 한다.
- ③ 만족도조사 결과는 '별표5' 서식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3년간 보관하여야

한다.

[전문신설 2021.09.10.]

제7장 보칙

제28조(제재조치) ① 진흥원장은 '관리규정'제42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와 함께 '별표2'와 같이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.(개정 2020.06.05.)

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장으로부터 환수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.〈개정 2020.06.05.〉

제29조(보안유지) ① 지원과제의 선정평가, 수행관리, 평가위원회, 결과평가 등에 참여한 자는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하거나 업무수행시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(개정 2020.06.05.) ②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③ 진흥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'관리규정'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(개정 2020.06.05.)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정산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.

부칙(2011.05.02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일)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채결된 협약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른다.

부칙(2015.12.31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02.03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06.05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1.09.10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